

대학원 CAU GRS 운영 지침

2018. 11. 1. 제정
2022. 5. 24. 개정
2023. 6. 23. 개정

주무부서 : 대학원교육지원팀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중 CAU GRS(이하 “본 장학금”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입학 시 교원임용규정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CAU GRS에 선발된 자로 한다.(개정 2019.05.01.)

제3조(구비서류) ① CAU GRS에 선발된 자는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CAU GRS에 선발된 자는 매학기 초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일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일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전일제 증명서류 및 전일제 여부 판단은 [별표 1] GRS 전일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2. 05.24.)

제4조(의무사항 제출) CAU GRS에 선발된 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의무사항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만 인정한다.

2. 논문은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단독발표를 인정한다.

3. 논문은 본 장학금을 포함하여 논문제출을 의무로 하는 본 대학교의 타장학금 수혜자 및 GPF 선발자와의 공동 연구 수행 시, 하나의 실적으로만 인정한다.

4. 논문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제90조 및 제95조에 해당하는 학위 청구논문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 논문과는 중복할 수 없다.

5. 논문 게재 시 “이 논문은 0000(입학년도)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영문인 경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0000(입학년도)”)을 명시해야 한다.

6. 논문에 대한 본 대학교 및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및 병기는 CAU GRS 사사문구를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만 인정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이 동일하면서 사업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제번호가 있는 경우 과제번호별로 사사문구 개수를 산정한다.(개정 2019. 9. 1.)

7. 논문게재 또는 논문게재확정증명서 제출을 학위논문심사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술기관 편집자의 게재 승인 편지(Acceptance letter)와 함께 해당 논문에 기재할 사사문구를 명시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 시 게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논문게재 완료 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5조(장학금 회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재학연한 내 중간에 의무사항 이행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자가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생이 석사과정 GRS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중도 포기 시, 석사과정 장학금은 미회수) (개정 2021. 6. 16.)
2. 허위로 논문을 제출했을 경우
3. 표절이나 조작으로 연구 논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게재를 취소했을 경우
4. 신청서류에 고의적인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
5. 본 제도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가명 혹은 명의를 도용해 지원한 경우

제6조(지도교수 GRS 추천 제한) GRS에 선발된 자가 재학연한 내 의무사항 논문을 미제출한 경우, 의무사항 논문을 제출하거나 수혜 받은 GRS 장학금을 반납할 때까지 그 지도교수는 이후 GRS 장학생 추천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 1. 9, 개정 2021. 6. 16.)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6.23.>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GRS 전일제 기준

1. GRS 전일제 조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업이 없어야 함(고용 및 근로계약이 없어야 함)

2. 전일제 여부 판단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로 전일제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로 보지 않으며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전일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등이 없는 지역가입자

나)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등이 없는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다) 산재보험 중앙대학교에서 가입한 학생연구자

라) 의학 계열에서 **우리대학** 및 우리대학병원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인턴 및 레지던트

마) 학기당 6학점(6시간)을 이내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강의시간을 증빙하는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자 (1학점을 1시간으로 처리하며 타 근무지까지의 학점을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바) 마)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강사 강의학점과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함

[GRS 전일제 기준]

구분	전일제 인정 기준	비고
국민연금	1) 미가입 2)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자 명칭에 기록사항이 없는 지역가입자	4대 보험의 전일제 인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전일제로 인정 단, 강사의 경우 6학점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강보험	1) 미가입 2)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자 명칭에 기록사항이 없는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3) 직장피부양자	
산재보험	1) 미가입 2) 중앙대학교에서 가입한 학생연구자	
고용보험	1) 미가입	

※ 직장인 및 사업장관리번호등록자(사업자등록자) 등은 비전일제로 판단